

#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정정표

2023년	2024년	비고
<p>③ 사회복지법인의 기관</p> <p>가. 이사회(理事會)</p> <p>5) 의결정족수(공익법인법 제9조)</p> <p>(생략)</p> <p>(<u>신설</u>)</p>	<p>③ 사회복지법인의 기관</p> <p>가. 이사회(理事會)</p> <p>5) 의결정족수(공익법인법 제9조)</p> <p>(생략)</p> <p><b>참고</b> 사회복지법인 온라인 이사회 운영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「공익법인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령상 서면결의를 금지하는 목적은 이사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,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① 이사회 출석을 요하는 자가 <b>동시 참여</b>, ② <b>참여자</b>가 누구인지 <b>확인 가능</b>, ③참여자 <b>상호 간 의견교환이 가능</b>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</li> <li>- <b>개인식별이 가능한* 원격 통신 수단</b>(영상회의 등)을 통해 <b>온라인 이사회가 상시적으로 허용</b>(법무부 유권해석, '20.12월)</li> </ul> </li> <li>* (변경 전) 대면으로 이사회 개최 → (변경 후) 출석 및 결의가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비대면으로 이사회 진행 가능</li> <li>※ 이 경우, 법인은 주무관청의 지도·감독 및 분쟁소지 해소를 위해 영상회의를 녹화하여 보관할 것</li> <li>※ <b>의사록 공증 : 온라인 개최 시, 공증인은 실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는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회의 진행 및 결의 성립 등을 검사(공증인은 온라인 이사회회의록 참석 인증 시 관계 법령 엄격 준수 필요) (삭제)</b></li> </ul>	<p>p.36</p>